

인천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9재나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취소]

전 문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U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19. 9. 24.

판결 선고 2019. 12. 3.

제 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9951 판결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나355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 28. 접수 제120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9. 7. 접수 제117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재심 전 항소심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2. 4. 2.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99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 28. 접수 제120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 및 같은 법원 2007. 9. 7. 접수 제117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11. 27. 원고의 위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등기원인이 없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 2013나3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27.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C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졌으므로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C주택조합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8.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8144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 1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4.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16. 인천지방법원 2019재나7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주택조합에 대한 채무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T은 실제 채권·채무내역이 기재된 청산종결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 C주택조합의 원고에 대한 가공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고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하여 T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사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T은 2018. 12.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고단55, 72(병합)호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원고와 사이의 위
민사소송에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원인관계 있는 가등기임을 주장할생각으로 피고가
C주택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정당하게 양도받은 것처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사기,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T이
춘천지방법원 2019노1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6. 14. 검사와 T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T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도903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1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된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T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위
형사판결은 사기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것으로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그 밖의 물건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나아가 설령 T이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문서의 무형위조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54862
판결 등 참조), T에 대한 사기죄 등의 유죄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나 변조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 판사 서인덕, 판사 이재환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천시 오정구 D, O, P, Q에 있는 R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아파트
 지1층 내지 15층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S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2.2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천시 오정구 D 대 622.5㎡
2. 부천시 오정구 O 대 687.6㎡
3. 부천시 오정구 P 대 688㎡
4. 부천시 오정구 Q 대 616.6㎡

대지권의 표시

- 1 소유권 대지권 635883.75분의 5352.016
- 2 소유권 대지권 702383.4분의 8201.4368
- 3 소유권 대지권 702792분의 7691.0848
- 4 소유권 대지권 629856.9분의 6049.9424. 끝.

1) 원고의 재심청구취지는 결국 제1심판결과 같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선행하여 기재한다.

